

# 과연 BOOK



みんなが、子育てしやすい国へ。

すくすく

ジャパン!

모든 어린이들이  
웃는 얼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육아하실 수 있으며  
키우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가 시작됩니다.



2012년 8월 일본의 어린이·육아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육아 지원법」이라는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관련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유아기의 학교 교육이나 보육,

지역 육아 지원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추진해 가는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가 2015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신제도의 실시를 위해, 소비세가 10%로 된 경우의 증수분으로부터

매년 7,000억엔 정도가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육아 지원을 위해 귀중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이러한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좋은 점을 하나로 통합한 「인정 어린이원」의 보급을 도모합니다.



보육 시설을 늘리고, 대기 아동을 줄여서, 육아하기 편하고 일하기 편한 사회로 만듭니다.



유아기의 학교교육이나 보육, 지역의 다양한 육아 지원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추진합니다.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육아도 충실하게 지원합니다.

● 심벌마크 (표지) 에 대해...신제도의 중심에 있는 어린이들이 개성 넘치고 활기차게 연주하는 모습에 의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작성하고 있습니다.

목차	신제도로 늘어나는 교육·보육 시설.....05	인정에 있어서.....13
	지역 육아 지원의 충실.....07	이용자 부담 이미지.....15
	신제도의 이용 흐름.....11	Q&A.....17

みんなが、子育てしやすい国へ。

# すくすく ジャパン!

「양」과 「질」의 양면에서 더욱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에서는,  
육아를 사회 전체로 지원합니다.

## 지원의 양을 확충!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이 이용하실 수 있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어린이의 연령이나 부모의 근로 상황 등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준비.  
교육·보육이나 육아 지원의 대안을 늘립니다. (지역 실정에 따라 다릅니다)
- 1명째는 물론, 2명째, 3명째도 안심하고 육아가 가능하도록 교육·보육의 수용을 늘립니다.  
(대기 아동의 해소를 위해 2017년도까지 새롭게 약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 시설을 확보합니다)

### 이용하실 수 있는 주된 지원

일이나 간병 등으로  
어린이를 돌볼 수  
없는 날이 많다

#### 0~2세



- 어린이집
- 인정 어린이원
- 소규모 보육
- 가정적 보육 등



#### 3~5세

- 어린이집
- 인정 어린이원 등

평소 집에 있어서  
어린이와 함께  
지내는 날이 많다

#### 0~2세



- 일시 말김\*
- 지역 육아 지원 거점\*
- 등

※3세 이상도 이용 가능합니다.



#### 3~5세

- 유치원
- 인정 어린이원 등

- 낮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학생이 다니는 「방과 후 아동 클럽」이나 어린이가 아플 경우 맡기실 수 있는 「병아 보육」 등의 지원도 늘립니다.

# 효과적인 어린이·육아 지원을. 소비세 증세분을 활용해서

## 지원의 **질** 을 향상!

어린이들이 더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된 개선 예>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등의 직원 배치 개선

- 어린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어린이 수를 개선합니다.  
( 예를 들면, 3세의 어린이와 직원의 비율을  
현행의 20명에 대하여 1명이 담당하는 것을,  
15명에 대하여 1명이 담당하는 등 )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등의 직원 처우 개선

- 직원의 처우 개선을 실시하고, 직장예의 정착 및 질이 높은 인재 확보를 도모합니다.

### 방과 후 아동 클럽의 충실

- 18시 반 넘어서도 개소하는 클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의 계기로 일과 육아의 양립이 곤란해지는 「초등1학년의 벽」의 해소를 도모합니다.



※아동양호 시설 등 사회적인 양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등의 개선에도 소비세가 사용됩니다.



## 신제도로 늘어나는 교육·보육 시설

# 유치원·어린이집에 덧붙여 <인정 <지역형 보육> 을 신설하고 대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시설로서는 지금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2 신제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덧붙여 양측의 장점을 또한 새롭게 소수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사업을 창설하고, 대기 확보하겠습니다.

**유치원**  
**3~5세**



### 초등학교 이후 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유아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이 용 시 간** : 오후까지의 교육 시간 이외, 유치원에 따라 교육 시간 전후나 유치원의 휴업 중의 교육 활동(말김 보육) 등을 실시.
- 이용하실 수 있는 보호자** : 제한 없음.

**인정 어린이원**  
**0~5세**



### 교육과 보육을 일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이나 특징을 겸비하고, 지역의 육아 지원도 시행하는 시설입니다 (2006년에 도입).
- 신제도에서는, 인가 절차의 간소화 등에 의해 새로운 설치나 유치원·어린이집으로부터의 이행이 수월하도록 배려해 한층 더 보급을 도모하겠습니다.

### 3개의 포인트

1

보호자의 일하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3~5세의 자녀분이라면 누구라도 교육·보육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호자가 일하지 않게 된 경우 등 근로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친숙해진 유치원을 지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육아 지원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어린이의 가정도 육아 상담이나 부모 자식의 교류 장소 등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0~2세의 자녀분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보육 필요성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1~14페이지 참조)

# 어린이원〉의 보급을 도모합니다.

## 아동이 많은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을 늘립니다.

곳이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겸비하는 「인정 어린이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급을 도모합니다.

아동이 많은 도시와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쌍방으로 친근한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  
0~5세

Illustration of a child playing a trumpet.

### 취업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보육하실 수 없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육하는 시설

- 이 용 시 간** 저녁까지의 보육 이외, 어린이집에 따라 연장 보육을 실시.
- 이용하실 수 있는 보호자** 맞벌이 세대 등 가정에서 보육하실 수 없는 보호자.



지역형 보육  
0~2세

Illustration of a child holding a green ball.

### 시설(원칙20명 이상)보다 소수 단위로 0-2세 어린이를 맡는 사업

- 신제도에서는 새롭게 시정촌의 인가 사업으로 하여, 대기 아동이 많은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늘립니다.
- 보육 시설을 신설하는 장소가 없는 도시에 덧붙여,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등 다양한 지역 상황에 맞추어 보육 시설을 확보합니다.

#### 4개의 타입

**1 가정적 보육(보육 마마)**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수(정원5명 이하)를 대상으로 세심한 보육을 합니다.

**2 소규모 보육**  
소수(정원6~19명)를 대상으로 가정적 보육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세심한 보육을 합니다.

**3 사업소 내 보육**  
회사 사업소의 보육 시설 등에서 사원 어린이와 지역 어린이를 함께 보육합니다.

**4 주택 방문형 보육**  
장애·질환 등으로 개별 케어가 필요하실 경우나 시설이 없어진 지역에서 보육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실 경우 등에는 보호자 자택에서 1대1로 보육을 합니다.

※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실제로 어떠한 사업이 제공되는지는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 지역 육아 지원의 충실

# 1

## 모든 육아 가정을 위해서 지역의 육아 지원도 이용하기

신제도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육아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는 「지역 육아 지원」 다양한 육아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맞는

### ● 이용자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시설이나 지역의 육아 지원 사업 등으로부터 육아 가정의 요구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나 상담·원조 등을 하겠습니다.
- 지역 육아 지원 거점이나 행정창구 기타의 장소에서 전임 직원이 상담 등을 접수합니다.
-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용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에 어린이·육아에 관한 종합 창구로서 누구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떤 분이더라도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

시정촌에 따라서는 다양한 시설이나 지역의 육아 지원 중에서 육아 가정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나 상담·원조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제도의 이용 신청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용자 지원 서비스도 활용해 주십시오.



# 편하게 변경됩니다.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일시 맡김」이나 거점, 낮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학생이 다니는 「방과 후 아동 클럽」 등 지역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용자 지원 사업을 창설합니다.

## ● 방과 후 아동 클럽

- 낮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아동(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초등학교의 여유 교실, 아동관 등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응입니다.
- 지역 요구에 맞추어 방과 후 아동 클럽을 늘려가는 동시에 신제도에서는 직원이나 시설·설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방과 후 아동 클럽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새로운 기준이란...

#### ● 직원

방과 후 아동 지원 요원을 지원 단위마다 2명 이상 배치 (그 중 1명을 제외하고 보조 요원 대체가 가능합니다).

#### ● 시설·설비

전용 구획(놀이·생활 장소로서의 기능, 정양하기 위한 기능을 구비한 방 또는 공간) 등을 설치하고, 면적은 아동 1명에 대해 대체로 1.65㎡ 이상.

#### ● 운영 일수·시간

- 연간 운영 일수는 25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토, 일, 장기휴업 기간 등 (초등학교 수업의 휴업일) 은, 1일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평일 (초등학교 수업의 휴업일 이외의 날) 은, 1일 3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향후는...

초등학교 입학 계기로 맞벌이 가정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이 곤란해지는 「초등 1학년의 벽」을 타파하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보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아동 클럽·방과 후 어린이교실을 정비하여 학교의 여유 교실 등을 철저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 ● 방과 후 아동 클럽의 확충 → 2019년도 말까지 약 30만 명 몫을 새롭게 정비

#### ● 방과 후 어린이교실\*의 충실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 지원·다양한 프로그램

#### ● 일체형\*의 방과 후 아동 클럽·방과 후 어린이교실을 추진

전 초등학교 구역 (약 2만 군데)에서 일체적으로 또는 연계해서 실시하고, 그 중 1만 군데 이상을 일체형으로 실시

\* 동일 초등학교 내 등에서 양쪽 사업을 실시하고, 방과 후 아동 클럽의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교실의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것



## 지역 육아 지원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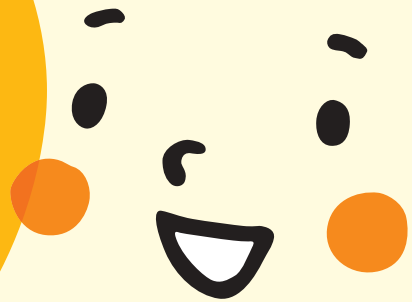
- 지역의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부모 자식의 교류나  
육아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장소를  
늘리겠습니다.
- 공공 시설이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행정이나 NPO법인 등이  
담당자가 되어 시행하겠습니다.

## 일시 말김

- 급한 불일이나 단기 시간제 근로 등  
육아 가정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일시 말김을 이용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지역 육아 지원 거점 등에서의 일시 말김
- 주로 원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인정 어린이원에서의 일시 말김(말김 보육)
- 어린이집이나 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등에서의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긴 경우를 이용한 일시 말김
- 방문형의 일시 말김



## 병아 보육

- 질병이나 질병 후의 어린이를  
보호자가 가정에서 보육하실 수 없을 경우에  
병원·어린이집 등에  
부설된 공간에서 말합니다.
- 어린이집 등 시설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보육 중인 아동을 보호자가 마중을  
올 때까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맡는 곳도  
있습니다.



## 패밀리 서포트 센터

- 영유아나 초등학생 등 육아 중인 보호자를 회원으로서, 어린이 맡김 등 원조받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과 원조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이 서로의 활동에 관해 돕도록 연락과 조정을 합니다.

## 양육 지원 방문

- 특히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고, 양육에 관한 지도·조언 등을 시행하는 것에 의해 가정의 적절한 양육의 실시를 확보합니다.

##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 방문

- 생후 4개월까지의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고, 육아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양육 환경 등의 파악을 합니다.

## 임산부 건강 진찰

- 임산부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산부에 대한 건강 진찰로서, ①건강 상태의 파악 ②검사와 신체 계측 ③보건 지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임신 기간 중의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른 의학적 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제도의 대응은

###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추진합니다.

- 시정촌은 지역 육아 가정의 상황이나 육아 지원에의 요구를 확실히 파악하고, 다양한 시설·사업 등 지원 메뉴 속에서 지역 요구에 적절한 것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대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정촌은 신제도의 시작 (2015년 4월) 부터 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정촌 어린이·육아 지원 사업 계획」을 만듭니다.
- 도도부현이나 국가는 이러한 시정촌의 대응을 제도면, 재정면 등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실제로 어떠한 사업이 제공되는지는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 신제도의 이용 흐름

## 시설 등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이용을 위한 인정을 받습니다.

신제도에서는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의해 3가지 구분의 인정에 어린이원, 지역형 보육)의 이용처가 결정됩니다.

이용 절차는 시기나 흐름이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의 이용 흐름	유치원 이용 희망하시는 경우	<p><b>1</b></p> <p>유치원 등에 직접 이용 신청을 합니다</p> <p>※시정촌이 필요에 따라 이용 지원합니다.</p>	<p><b>2</b></p> <p>유치원 등으로부터 입소 내정을 받습니다</p> <p>(정원 초과할 경우 등에는 면접 등의 전형 있음)</p>
	어린이원 이용 희망하시는 경우	<p><b>1</b></p> <p>시정촌에 「보육 필요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p> <p>※이용 희망 신청 (3) 도 동시에 가능합니다.</p>	<p><b>2</b></p> <p>시정촌으로부터 인정증이 교부됩니다</p> <p>(2호 인정·3호 인정)</p>

※인정 어린이원을 이용하실 경우는 1호 인정의 경우는 파랑 테두리의 절차 흐름, 2호와 3호

### 신제도 이용에 드는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에 따른 납부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제도의 다양한 지원에 드는 보육료는, 현행의 부담 수준이나 보호자의 소득에 따르고, 국가가 향후 정하는 기준을 상한으로서 시정촌이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15페이지 참조)

※신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의 이용 흐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보호자분에게

따라 시설 등 (유치원, 어린이집, 인정

거주하시는 시정촌이나 시설 등으로

## 3개 인정 구분

### 1호 인정 교육 표준 시간 인정

자녀분이 **만 3세 이상**으로 유치원 등에서의 교육을 희망하실 경우  
 [이용처]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 2호 인정 만 3세 이상·보육 인정

자녀분이 **만 3세 이상**으로 「보육이 필요한 사유」(13페이지 참조)에 해당하고 어린이집 등에서의 보육을 희망하실 경우  
 [이용처]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 3호 인정 만 3세 미만·보육 인정

자녀분이 **만 3세 미만**으로 「보육이 필요한 사유」(13페이지 참조)에 해당하고 어린이집 등에서의 보육을 희망하실 경우  
 [이용처]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지역형 보육

3

유치원 등을 통해  
이용을 위한  
인정을 신청합니다

4

유치원 등을 통해  
시정촌으로부터 인정증이  
교부됩니다 (1호 인정)

5

유치원 등과  
계약합니다

3

어린이집 등  
이용 희망의  
신청을 합니다  
(희망하시는 시설명 등을 기재)

4

신청자의 희망과 어린이집 등의  
상황에 따라 시정촌이  
이용 가능 여부를 조정합니다

※보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분 (2호, 3호 인정)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시정촌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등 알선 등도 합니다.

5

이용처를  
결정한 후에  
계약이 됩니다

인정의 경우는 빨강 테두리의 절차 흐름이 기본이 됩니다.

계약·납부 장소는 이용하시는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 어린이원·유치원·  
공립 어린이집·지역형 보육을  
이용하실 경우

이용자는 시설·사업자와 계약하고,  
보육료를 시설·사업자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정촌)에  
납부합니다.

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경우

이용자는 시정촌과 계약하고 보육료를 시정촌에 납부합니다.



## 인정에 있어서

# 어린이집 등에서의 보육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을 희망하실 경우의 보육 인정 (2호 인정, 3호 인정)에 있어서는 아래 3가지가 고려됩니다.

### 1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 (전일제 이외, 시간제, 야간, 주택 내의 노동 등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를 포함)
- 임신, 출산
- 보호자의 질병, 장애
- 동거 또는 장기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친족의 간병·간호
- 재해 복구
- 구직 활동 (창업 준비를 포함)
- 취학 (직업훈련학교 등에서의 직업훈련을 포함)
- 학대나 DV의 우려가 있는 것
- 육아 휴업 취득 중에 이미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어서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할 것
- 기타, 상기와 비슷한 상태로서 시정촌이 인정할 경우

※동거하는 친족분이 어린이를 보육하실 수 있을 경우, 이용 우선 순위가 조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 2 보육의 필요량 근로를 이유로 이용하실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로 구분됩니다.

a 「보육 표준시간」 이용 ▶ 전일제 근로를 상정한 이용 시간 (최장 11시간)

b 「보육 단시간」 이용 ▶ 시간제 근로를 상정한 이용 시간 (최장 8시간)

※ 「보육 단시간」 이용이 가능해지는 보호자 근로 시간의 하한은, 1개월당 48~64시간이며, 그 범위 내에서 시정촌이 정하게 됩니다.

### 3 「우선 이용」에의 해당 유무

한 부모 가정, 생활보호 세대, 생계 중심자의 실업, 자녀분에게 장애가 있으신 경우 등에는 우선적으로 보육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용은 시정촌에서 검토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 희망하실 경우는 보육이 필요한

보호자 여러분의 근무 여건과 육아 상황에 맞추어,  
예를 들면 이러한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도를 토대로 여러분이 받는 지원 찾기에 참고로 하십시오.

한편, 각종 필요한 지원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전문 직원을 가까운 장소에 배치하는 대응도 시행합니다.

육아 휴직이 끝나면, 일도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싶다!

부모님이 전일제 맞벌이 세대 (또는 한 부모 가정에서 전일제)인 경우

- 인정 어린이원
  - 어린이집
  - 유치원 + 일시 맡김 ※만 3세 이상인 경우
  - 소규모 보육 등 ※만 3세 미만인 경우
  - 방과 후 아동 클럽 ※초등학생인 경우
- 보육 이용은 「보육 표준시간」 이용이 기본이 됩니다.

주 3일 시간제 근무날에만 맡김 보육도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시간제 맞벌이 세대 (또는 한 부모 가정에서 시간제)인 경우

- 인정 어린이원
  - 어린이집
  - 유치원 + 일시 맡김 ※만 3세 이상인 경우
  - 소규모 보육 등 ※만 3세 미만인 경우
  - 방과 후 아동 클럽 ※초등학생인 경우
- 보육 이용은 「보육 단시간」 이용이 기본이 됩니다.

어린이도 아직 어리고, 느긋하게 육아를 즐기고 싶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전업주부(남편) 세대인 경우

- |               |                    |                    |              |   |
|---------------|--------------------|--------------------|--------------|---|
| [ 시설을<br>이용 ] | ● 인정 어린이원<br>● 유치원 | ) ※만 3세 이상<br>인 경우 | [ 재택<br>육아 ] | ● 지역 육아 지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육아 지원 거점이나 인정 어린이원 등의 육아 지원</li> <li>• 일시 맡김</li> </ul> |

## 보육 필요성 인정의 유효 기간

보육이 필요로 하는 사유에도 따릅니다만, 2호 인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가 되며,  
3호 인정에 대해서는 만 3세 생일까지가 유효 기간의 기본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20페이지 Q&A를 참조)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실제로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는지는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이용자 부담 이미지

# 신제도에 있어서 보육료는 내에서 각각의 시정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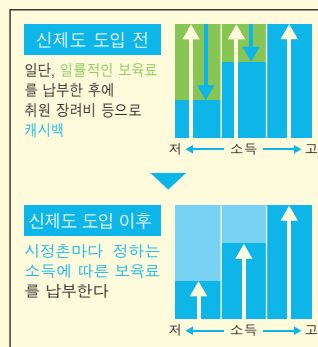
보육료의 상한금액은, 대체로 현행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이용자 부담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 표준시간 인정(1호 급부)을 받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현행 사립 유치원의 보육료 금액의 전국 평균 금액으로부터 소득에 따른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 금액을 공제해서 설정.

###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교육 표준시간 인정을 받은 어린이의 이용자 부담 이미지(월액)  
※오른쪽 기재 금액은 국가가 정한 상한금액입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들인 비용이 상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비용금액이 상한금액으로 됩니다)\*1

- 소득 계층에 따라 보육료가 설정됩니다.  
(계층 구분의 조건 등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 실비 부담이나 추가 이용료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계층 구분	보육료 상한금액
① 생활보호 세대	0엔
②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3,000엔
③ 시정촌민세 소득할 과세액 77,100엔 이하	16,100엔
④ 시정촌민세 소득할 과세액 211,200엔 이하	20,500엔
⑤ 시정촌민세 소득할 과세액 211,201엔 이상	25,700엔

###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3세 미만 한정)

보육 인정을 받은 어린이의 이용자 부담 이미지(월액)  
※오른쪽 기재 금액은 국가가 정한 상한금액입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들인 비용이 상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비용금액이 상한금액으로 됩니다)\*1

- 소득 계층에 따라 보육료가 설정됩니다.  
(계층 구분의 조건 등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 보육이 필요한 시간에 따라 보육 표준시간(11시간) 과 보육 단시간(8시간) 의 2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층 구분	보육료 상한금액			
	3세 이상		3세 미만	
	보육 표준시간	보육 단시간	보육 표준시간	보육 단시간
① 생활보호 세대	0엔	0엔	0엔	0엔
②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6,000엔	6,000엔	9,000엔	9,000엔
③ 소득할 과세액 48,600엔 미만	16,500엔	16,300엔	19,500엔	19,300엔
④ 소득할 과세액 97,000엔 미만	27,000엔	26,600엔	30,000엔	29,600엔
⑤ 소득할 과세액 169,000엔 미만	41,500엔	40,900엔	44,500엔	43,900엔
⑥ 소득할 과세액 301,000엔 미만	58,000엔	57,100엔	61,000엔	60,100엔
⑦ 소득할 과세액 397,000엔 미만	77,000엔	75,800엔	80,000엔	78,800엔
⑧ 소득할 과세액 397,000엔 이상	101,000엔	99,400엔	104,000엔	102,400엔

\*1: 보육료는 실제로 드는 비용이 한도금액이 되므로, 예를 들어 실제로 어린이 보육에 드는 비용이 50,000엔인 경우, ⑥~⑧의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50,000엔이 보육료의 상한이 됩니다.



# 국가가 정하는 상한금액의 범위 결정합니다.

## 다자녀 세대의 보육료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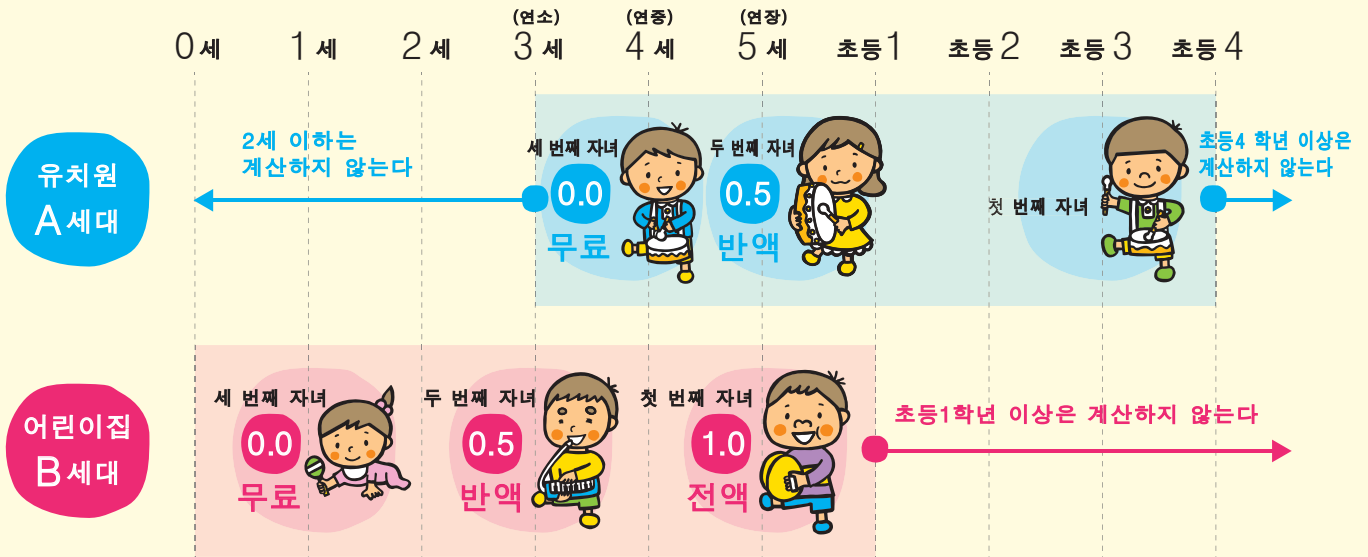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등을 형제가 이용하실 경우, 최연장 어린이부터 순차적으로 2명째는 반액, 3명째 이후는 무료가 됩니다.

- **유치원**에서는 연소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범위 내에 어린이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최연장인 어린이를 첫 번째 자녀, 그 아래 어린이를 두 번째 자녀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 자녀는 전액부담이 되지만, 두 번째 자녀는 반액, 세 번째 자녀 이후는 무료가 됩니다.

※단, 첫 번째 자녀가 연소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성장해서 초등 4학년 이상이 된 경우)는 지금까지 두 번째 자녀였던 어린이를 첫 번째 자녀로 계산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범위 내에 어린이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최연장인 어린이를 첫 번째 자녀, 그 아래 어린이를 두 번째 자녀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 자녀는 전액부담이 되지만, 두 번째 자녀는 반액, 세 번째 자녀 이후는 무료가 됩니다.

※단, 첫 번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성장해서 초등 1학년 이상이 된 경우)는 지금까지 두 번째 자녀였던 어린이를 첫 번째 자녀로 계산합니다.



● 내의 수치는 첫 번째 자녀의 보호자 부담을 1.0으로 한 경우의 부담 비율

※인정 어린이원의 경우, 교육 표준시간 인정을 받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동등하게 되며, 보육 인정을 받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됩니다.

※소규모 보육을 이용하실 경우,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됩니다.

**! 신제도에서는 매년 9월이 보육료의 전환 시기가 됩니다.**



## 인정 어린이원 등 시설에 관한 Q&A

**Q** 인정 어린이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인정 어린이원이란, 교육·보육을 일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설로 이른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양측 장점을 겸비하는 곳입니다. 보호자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 보호자의 근로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친숙해진 유치원을 지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인정 어린이원에는 육아 지원 시설이 준비되고 있으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어린이의 가정도 육아 상담이나 부모 자식의 교류 장소에의 참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페이지 참조



**Q** 대기 아동이 제로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인정 어린이원은 설치되지 않습니까?

**A** 신제도에서는 시정촌이 지역의 교육·보육의 요구(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에 적절한 시설 등의 정비(공급)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촌의 「사업계획」(10페이지 참조)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인정 어린이원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실을 예정입니다. 게다가, 신제도에서는 이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잡혀있는 지역도 포함시키고,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인정 어린이원으로 이행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유연하게 인정하는 대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Q** 신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없어져버리는 것입니까?

**A** 현재의 유치원·어린이집은 반드시 인정 어린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해 갈지를 정하게 됩니다. 신제도를 토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유치원·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시정촌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Q** 유치원의 말김 보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A** 유치원의 말김 보육은, 신제도에서는 「일시 말김」으로서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용료 등은 변경되는 것이 있으므로 유치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신제도에서는 주로 원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에서의 일시 말김 이외에 어린이집이나 인정 어린이원 등에서의 일시 말김을 충실하게 하는 동시에, 방문형 일시 말김도 새롭게 창설하여 육아 가정의 요구에 맞추어 이용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 09페이지 참조

## 보육 이용에 관한 Q&A

**Q** 대기 아동이 많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만, 신제도 도입으로 어린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까?

**A**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향후에도 어린이집이나 인정 어린이원이 정비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 정비를 위한 장소가 부족한 도시 등에서 보육 시설의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소수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소규모 보육」이나 「가정적 보육(보육 마마)」 등의 사업에도 새롭게 재정 지원을 하고 보육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 06페이지 참조

이러한 시설·사업의 구체적인 정비는, 가까운 시정촌이 지역의 유아교육·보육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책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10페이지 참조

**Q** 대기 아동 문제는 해소되는 것입니까?

**A** 심각한 대기 아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계획」을 책정하고, 신제도의 시작(2015년 4월 예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보육 사업이나 유치원에서의 맡김 보육, 인가를 목표로 하는 인가받지 않은 보육시설에의 지원이나 보육 교사분의 처우 개선 등의 대응을 추진하며, 게다가 신제도의 본격 실시에 의해 보육 요구의 절정기를 맞이하는 2017년도 말까지 약40만 명을 수용 가능한 보육 시설을 확보하여 대기 아동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지역의 인가 어린이집에 결원이 없어 인가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가받지 않은 보육시설은 신제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질적 보육을 확보하면서 양적 보육을 확충하기 위해 인가를 목표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가 어린이집이나 인정 어린이원으로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도록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계획」에 의한 대응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제도에서는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원칙적으로 인가되는 구조가 도입되어,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인가 시설이 증가할 것이 기대됩니다.

**Q** 소규모 보육의 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가 3세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0-2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보육이나 가정적 보육(보육 마마)에는, 졸업 후에 다닐 곳을 확보하기 위해 「연계 시설」(인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실정을 근거로 해서 연계 시설에 우선적인 이용 범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졸업 후에 계속해서 보육을 희망하실 경우에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연계 시설의 설정까지 일정 기간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3세 이후도 소규모 보육 등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재택·지역의 육아 지원에 관한 Q&A

**Q**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맞벌이 가정이 아니면 신제도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신제도는 모든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육아 지원으로서 급한 불일 등의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일시 맡김이나 지역에서 편하게 육아 상담이나 부모 자식의 교류를 하실 수 있는 「지역 육아 지원 거점」 등도 늘리겠습니다.

▶09페이지 참조

또한, 시간제 등의 근무 여건의 세대라도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을 받기 편하도록 「보육 필요성」의 인정 구조를 도입합니다.

▶13페이지 참조



**Q** 일시 맡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정 등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까?

**A** 일시 맡김을 이용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보호자의 관혼상제·질병, 미용실 등 갑작스런 불일이 있을 때 육아 가정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이나 이용 시간 등 상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09페이지 참조

## 방과 후 아동 클럽에 관한 Q&A

**Q** 「방과 후 아동 클럽」의 개선이 도모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방과 후 아동 클럽은, 신제도에서는 직원의 자격·인원수, 시설·설비, 아동의 집단 규모 등에 대해서 새롭게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방과 후 아동 클럽의 개선에도 소비세 재원을 활용하여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방과 후 아동 클럽」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08페이지 참조



**Q** 「방과 후 아동 클럽」에도 많은 대기 아동이 있습니다만, 신제도로 해소됩니까?

**A** 취학 전에 보육을 이용하고 있던 어린이가 취학 후에 계속해서 방과 후 아동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제도에서는 방과 후 아동 클럽에 대해서도 시정촌의 「사업계획」에 근거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제도의 시작 (2015년 4월 예정)을 기다리지 않고, 개소 시간 연장을 시행하는 방과 후 아동 클럽을 지원하는 대응을 2014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08페이지 참조

## 보육의 필요성 등 인정에 관한 Q&A

**Q**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A** 유치원은 만 3세 이상의 어린이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도에서는 시설 등을 이용하는 보호자분에게 3가지 구분에 의한 인정을 받도록 하고, 유치원을 이용하실 경우는 「교육 표준시간 인정」(1호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인정에 있어서 기존의 유치원 이용과 다른 조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호 인정은, 기본적으로 입소를 내정한 유치원을 경유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참조

**Q** 맞벌이를 하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복수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인정을 받으면 좋습니까?

**A** 맞벌이가 가정이라도 유치원에서의 교육을 희망하시는 등의 이유로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어린이집 등의 이용 희망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어린이집 등도 이용 희망하실 경우는 「만3세 이상·보육 인정」(2호 인정)을 받도록 하며, 그 이후의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 상황을 살펴 시정촌이 인정을 유지, 또는 변경할지를 정하는 것이 상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절차를 밟을 경우에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Q** 인정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유효기간 도중에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현황 보고 등은 매년 필요합니까?

**A** 교육 표준시간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간(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육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3년간(2호 인정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3호 인정은 만 3세 생일까지)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육의 필요성 인정을 받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는 그 시점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단, 구직 활동이 사유일 경우에 대해서는 90일을 기본적인 유효기간으로서 취급합니다. 또한, 현황 보고는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이나 이용자 부담의 결정 필요성을 근거로 해서 1년에 1회를 기본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참조

**Q** 3호 인정의 어린이가 만 3세가 되었을 경우, 뭔가 절차는 필요합니까?  
또한, 보육료는 어떻게 됩니까?

**A** 만 3세가 되어 3호 인정에서 2호 인정으로 될 경우는, 시정촌이 인정 변경을 하므로 보호자가 다시 보육의 필요성 인정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 3세가 된 연도 중의 보육료는 3호 보육료 그대로 유지되며, 다음 연도부터 2호 보육료가 적용됩니다. 한편, 인정 어린이원의 원아가 만 3세가 되었을 때는 교육 표준시간의 이용에 일시 말감을 조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1호 인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소규모 보육이나 가정적 보육을 졸업한 후에 인정 어린이원(교육 표준시간)이나 유치원에 입소해서 일시 말감을 이용하실 경우도 동일합니다. 변경 후에는, 1호 보육료와 일시 말감의 이용료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Q** 어린이집(인정 어린이원, 지역형 보육)은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부터 결정됩니까?

**A** 보육의 이용 조정이 필요할 경우인 「우선 이용」의 사유는 국가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용 조정 방법은 시정촌이 정합니다. 이용 희망자 수가 수용 인원 범위를 상회했을 경우, 시정촌이 정한 우선 사유에 준해서 이용 조정이 되어 이용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참조

## 이용 절차나 이용료에 관한 Q&A

**Q** 신제도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의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신청 방법으로부터 변경은 있습니까?

**A** 신제도에서의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제도와 절차 시기나 흐름이 대폭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유치원을 희망하시는 어린이의 보호자도 포함해 3가지 구분에 의해 인정을 받는 것이나 인정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증이 교부되는 것, 어린이집 등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정촌에 의해 이용 조정이나 알선을 받으실 수 있는 것 등 기존의 절차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향후, 거주하시는 시정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입수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 11페이지 참조



**Q** 신제도가 도입되면 보육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신제도에 있어서 보육료는 국가가 정하는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시정촌이 정합니다. 한편, 국가가 정하는 상한금액은 대체로 현행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이용자 부담과 동등한 수준의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15페이지 참조

**Q** 유치원 보육료 등의 구조가 변경되는 것입니까?

**A** 신제도에서는 유치원에 납부하는 보육료 자체가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서 시정촌이 정하는 부담액이 적용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에 더해 각 유치원에 있어서 실비 부담이나 추가 이용료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정촌 또는 유치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 15페이지 참조



**Q** 형제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니는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의 보육료가 경감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동일세대에서 여러 명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경우, 두 번째 자녀와 세 번째 자녀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감면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유치원의 경우도, 동일세대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두 번째 자녀와 세 번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는 동등한 감면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행 조치와 동등하게 다자녀 세대의 부담 경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6페이지 참조



Q 신제도에서는 시설이나 사업자에 따라 보육료는 다릅니까?

A 보육료는 각 시정촌이 인정 구분마다 시정촌민세액의 계층 구분별로 보육료를 정하므로, 같은 인정 구분과 계층 구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시설과 사업소에서든 동일한 보육료가 산정됩니다 (시정촌에 따라 다른 규정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설·사업소가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급식 비용, 통학버스비 등의 실비부담이나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필요로 하는 추가 이용료가 별도로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을 희망하시는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 15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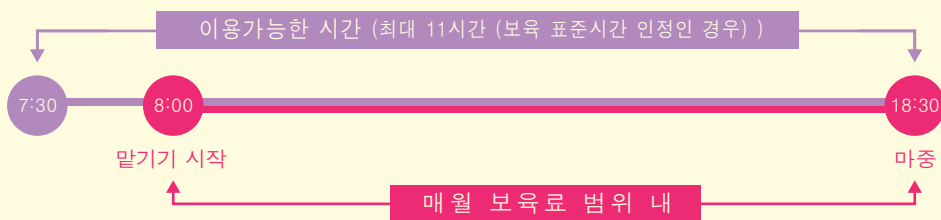
Q 신제도에서는 보육료는 매년 동일 금액이 산정되니까?

A 보육료는 시정촌민세액을 토대로 매년 결정되게 되고, 보육료의 전환 시기는 매년 9월이 됩니다 (8월 이전은 지난 연도분, 9월 이후는 해당 연도분의 시정촌민세액에 따라 보육료가 결정). 지난 연도의 수입 변동에 따라 보육료의 계층 구분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는 9월부터 새로운 보육료가 산정됩니다.

▶ 16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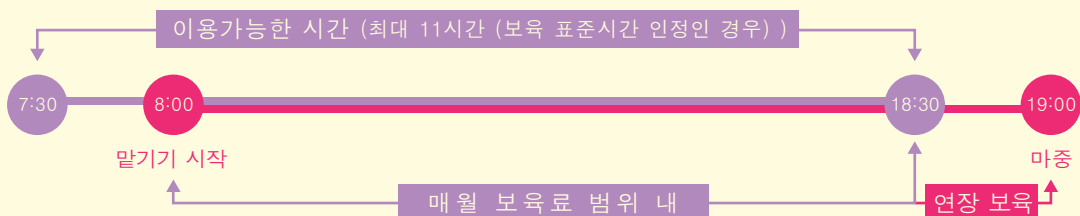
Q 보육 표준시간 인정 (최대 11시간)이란, 보육 표준시간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어린이를 맡기기 시작한 시간부터 최대 11시간은 추가 요금이 들지 않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A 보육 표준시간 인정의 11시간이란, 각 시설·사업자가 정하는 통상 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시간대 (이용가능한 시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의 범위 내라면 최대 11시간까지 추가 요금 없이 어린이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만, 11시간은 어느 시간이라도 추가 요금 없이 어린이를 맡기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7시 30분 ~18시 30분까지의 11시간을 설정하고 있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8시부터 맡기실 경우, 매월 보육료 범위 내에서 보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18시 30분까지가 됩니다. )



Q 시설이 정한 통상 보육 시간대를 초과해서 어린이를 맡길 수는 있습니까? 또한, 그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보육료는 어떻게 됩니까?

A 시설이 정한 통상 보육 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연장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그 경우, 연장 보육료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7시 30분~18시 30분까지의 11시간을 설정하고 있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8시~19시까지 맡기실 경우, 18:30~19:00시까지지는 연장 보육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는  
2015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문의처

---

● 내각부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 시행 준비실 Tel.03-5253-2111 (대표)